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6-033호

2026년도『베트남 글로벌 로봇센터(GRC) 구축사업 1차』 지원과제 모집 공고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베트남 글로벌 로봇센터(GRC) 구축사업 1차」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4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베트남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및 로봇 도입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로봇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거점 마련

□ **(사업내용)** 베트남 현지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공간에 글로벌 로봇센터(GRC)를 구축하고, 국산 교육용 로봇을 도입하여 현지 교육 및 시연에 활용

2. 예산규모 및 기간

□ **(예산규모)** 총 110백만원 내외

□ **(수행기간)** ’27. 1. 1. ~ 3. 31. (3개월)

□ **(사업비 매칭)** 없음(국비 100%)

□ **(선정규모)** 지원과제 1건 선정

3. 베트남 GRC 구축 내용

□ 베트남 GRC 구축 내용

○ 베트남 GRC 구축은 2년('26년 ~ '27년)에 걸쳐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이번 공고의 지원 범위는 1차 구축에 해당함

단계	2026년 1차 사업	2026년 2차 사업(예정)
기간	2027.01.01. ~ 2027.03.31.	2027.03.31. ~ 2027.12.31.
내용	- 센터 공간 사용권 확보 - 사무공간 구축 - 로봇 교육 공간 구축	- GRC 개소식(5월 예정) - 로봇 교육 및 실증 공간 구축 - 미니 스마트팩토리 구축 - 센터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지급

□ 2026년 베트남 GRC 1차 구축 내용

○ GRC 공간 사용권 확보

- 베트남 현지 300m 이상 공간의 사용권 확보
  * 선정된 공간의 사용계약 주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 함

○ GRC 사무공간 구축

- 사무공간 구성 및 책상·의자 등 가구·집기 구입·설치
- 인터넷·전원·회의환경 등 기본 업무환경 조성
-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비

○ GRC 로봇 교육 공간 구축

- 교육공간 구성 및 책상·의자 등 가구·집기 구입·설치
- 인터넷·전원·수업환경 등 기본 교육환경 조성
- 국산 교육용 로봇(1세트 이상) 및 필요한 주변장치 구매
- 로봇 포장·해외 운송·통관, 현지 설치 및 시운전
- 현지 담당자 사용·안전교육 및 매뉴얼·교육자료 제공
-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비

※ 진흥원은 센터 구축 여건에 따라 사무공간 조성, 공간 사용계약 체결 및 관련 비용 지급을 선정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범위는 협의를 통해 조정함

4.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 **(지원대상)** 국내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베트남 현지 비영리기관의 공간 제안 및 로봇 현지 설치·교육·활용 등의 참여확약서 제출 필수

□ **(추진체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기관이 과제 수행

○ **(주관기관)** 사업비 관리, 공간 사용계약 체결, 사무·교육공간 조성 및 국산 교육용 로봇 구매·운송·설치·시운전 등 수행

〈 구축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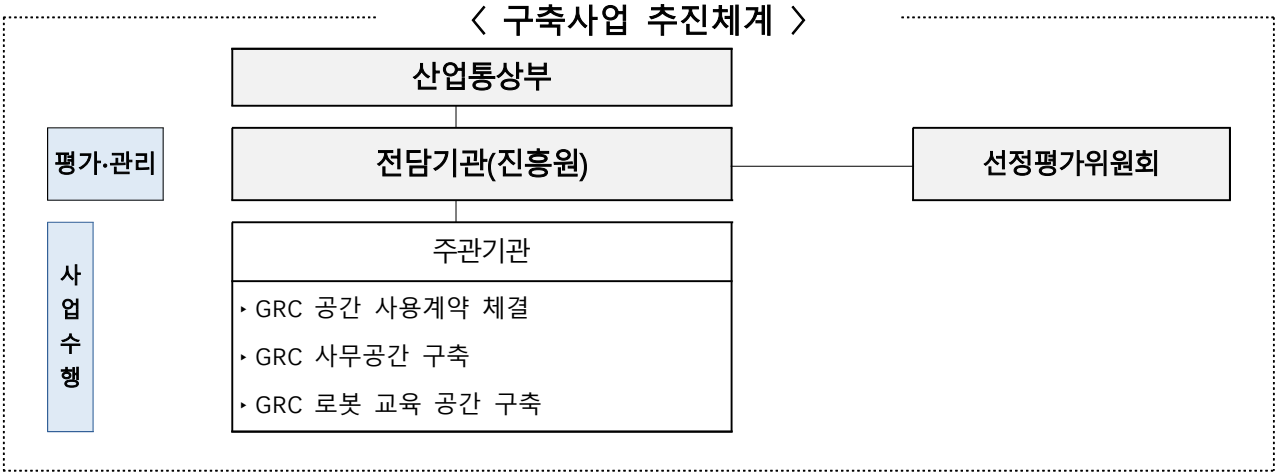

5.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 해외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가 가능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공간 조성, 로봇 조달·설치 및 현지 기관과의 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로봇산업, 국제협력 또는 해외 공간 구축 등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관

□ **(우대사항)**

ㅇ 베트남 현지 법인·지사·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 수행 인력과 업무 대응체계를 확보한 경우

ㅇ 해외 거점 구축 또는 로봇 조달·설치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ㅇ 로봇 분야 국제협력 또는 해외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ㅇ 해외 전시회 또는 행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6.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절차)** "서류검토(KIRIA) 및 재무건전성 평가(회계법인)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평가위원회)" 순으로 진행

ㅇ **(서류 검토)**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대상 여부 확인 등

ㅇ **(재무건전성 평가)**「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내 별도 지정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여부 검토 등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구축 내용 기획 및 수행 능력, 기대효과, 사업비 적정성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지원국비 최종 확정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 구축내용 기획부터 성과 활용까지 사업 수행의 전·후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구축내용 기획, 수행능력, 기대효과, 성과활용, 사업비 편성 등 총 5가지 항목 중심으로 평가

구분	평가내용	배점
내용기획 (40)	ㅇ 제안 공간의 적정성 및 교육용 로봇의 구매·설치계획	20
	ㅇ 세부 추진 일정의 실현 가능성 및 과업 범위의 적정성	20
수행능력 (30)	ㅇ 주관기관과 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련 사업 수행 경험	15
	ㅇ 인력 역할 분담 및 베트남 현지 운영·안전관리 역량	15
기대효과 (10)	ㅇ 국내 로봇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반 조성 효과	10
성과활용 (10)	ㅇ 로봇센터와 도입 로봇의 교육·시연 활용계획	10
사업비 편성 (10)	ㅇ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선정기준)**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거쳐 지원 과제 1건 선정

7.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사업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신청기관에서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타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진흥원 소관 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및 사후관리대상 과제로 처리(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제외)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후관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8. 추진 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6. 11. 24. ~ 12. 24.
⬇		
서류 검토 및 재무건전성 평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회계법인	‘26. 12. 28.
⬇		
발표평가 및 사업비심의	평가위원회	‘26. 12. 28.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산업부 ⇨ 진흥원 ⇨ 신청기관	‘26. 12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선정기관	‘27. 1월중
⬇		
사업 수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선정기관	‘27. 1. 1. ~ ‘27. 3. 31.
⬇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관	‘27. 3. 31.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27. 3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6. 11. 24.(화) ~ 12. 24.(목), 16시

○ **(접수기간)** ‘26. 12. 15.(화) ~ 12. 24.(목), 16시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ㅇ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주의사항

❶ KIRIA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접수증 확인 필수

❷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❸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및 부수

순번	양식	제출서류	필수 여부	제출대상	비고
1	양식1	ㅇ 사업계획서	필수	주관	한글파일 1부 및 날인된 PDF 1부
2	-	ㅇ 발표자료(자유양식)			PPT 1부
3	-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4	-	ㅇ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외, 신청일 1개월 내 발급)			1부
5	-	ㅇ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최근 2개년 각 1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6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7	양식2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신청기관 날인, 참여인력 서명된 PDF 파일 1부
8	양식3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기관 날인된 PDF 파일 1부
9	양식4	ㅇ 참여의사 확약서			신청기관 날인된 PDF 파일 1부
10	-	ㅇ 책임자 재직증명서			1부
11	양식5	ㅇ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신규 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해당시		1부
12	-	ㅇ 사전지원제외 대상 예외 소명자료 (신용평가보고서 등)			1부
13	-	ㅇ 베트남 현지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립·등록 증빙	필수	베트남 현지 기관	1부
14	양식6	ㅇ 참여의사 확약서			기관 날인된 PDF 파일 1부
15	-	ㅇ 제공 공간 및 시설 정보			1부

* 복수의 파일은 압축파일(.zip) 형태로 제출 가능

10.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ㅇ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기타

ㅇ 사업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11.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ㅇ 대외협력TF팀 권건환 책임, 053-210-9982, kgh@kiria.org
ㅇ 대외협력TF팀 강나원 선임, 053-210-9985, nawon@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 이용 관련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PMS 고객센터: 070-4047-7287

12.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ㅇ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25년부터 사업관리시스템(PMS)이 사업비관리시스템(RCMS)과 연계되어 적용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방법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제기 가능

○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선정과제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위해 사업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관련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과제에 선정된 수행기관 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은 본 사업 또는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홍보, 전시, 행사 등과 관련된 자료 요구 또는 참여 요청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

○ 본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를 적용하지 않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인건비 계상률(참여율) 규정은 적용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계획서는 HWP, PDF 양식으로 모두 제출

붙임 1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편성)** 주관 및 참여기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기준 >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편성기관	총사업비 비율
직접비	인건비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내부인건비)**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인건비 * 참여기관별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 가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주관기관	15% 이내
	연구 시설・장비비		▫ **로봇센터 시설 구축비** - 시설 구축을 위해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역비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상세내역 기재		50% 이상
	연구재료비		▫ **로봇센터 구축에 필요한 재료비** -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 단가 1,000만원 이상 재료(로봇, 부품 등)의 경우 가격산출에 대한 증빙(견적서 등)을 붙임으로 제출		
	연구활동비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필수)** - 수수료 책정 기준 참고 ▫ **이행보증보험(필수)** - 지원국비의 0.6% 산정 ▫ **운송비 및 관세**		35% 이내
		전문가 활용비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 1차 구축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사경비		
		인쇄복사비	○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국내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외여비	○ 참여인력의 국외여비 및 현지교통비		
		사무용품비	○ 사업 관련 사무용품비		
		특근식대	○ 사업 관련 야근 및 특근 식대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비		

* 사업비 세부항목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참고하여 편성
* 사업비 사용 관련 내용 사업계획서 내 기재 필수

붙임 2 수수료 책정 기준

□ 반영 필수사항

○ **(정산수수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

사업비 구분(총사업비 기준)	수수료(천원)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국비의 0.6% 산정

* 例) 총사업비 6억원 신청(국비 3억원) ⇨ 국비 3억원의 0.6%인 약 180만원을 수수료 비목으로 산정 / **가입기간은 협약일~'27.4.30.**

* 선정 후 사업비 지급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필수

○ **(집행방식)**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회계법인 및 보험사에 납부

구분		집행방식	비고
수수료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 회계법인*	*진흥원 지정 위탁기관
	이행보증보험료	주관기관 → 보험사	